

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나73836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희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7. 9.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소498219 판결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각 2018.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아동복 판매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C’을 1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되, 순수익의 10%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에 위탁운영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15. 7. 16.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6. 피고로부터 아동의류 등 물품 구매 요청(구매지시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7,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기 지급받은 3,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여 2015. 7. 16.자 계약파기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등과 관련하여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89, 2017고단2912(병합), 4895(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636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관련 형사사건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2016고단8289】

### 3. 원고에 대한 사기

피고는 2015. 7. 15.경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E’ 카페에 피고가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위탁 관리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원고에게 “내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수가 약 2만 명을 넘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도 잘되고 있어서 휴가를 갈 시간도 없는데, 일을 도와주던 사촌동생이 로스쿨 공부를 시작하여 일손까지 부족하게 되어 해당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초보라도 상관없다. 이미 해당 쇼핑몰이 활성화되어 있고, 내가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게 계약금과 물품 판매대금만을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재택 근무하면서 이미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해당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는 불과 약 1개월 전인 2015. 5. 29.경 인터넷 도메인 판매업체로부터 해당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만을 1년에 약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의 동거남인 F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뿐이고, 해당 쇼핑몰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다수의 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가 싸게 미리 구매하여 놓은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피고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7. 15.경 50만 원, 2015. 7. 16.경 2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피해자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등으로 수령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1) 피고는 원고와 정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거나 쇼핑몰 운영 및 포토샵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2) 설령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5. 7. 16.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금 등 3,000,000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미 합의 해지하였다.
- 3)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 3. 판단

### 가. 피고의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내지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의 인정 여부

1)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사기 내지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제공하여 주고 상품성 있는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2.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요청에 의하여 2015. 7. 16.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추가 물품대금 지급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파기약정서 제1항에는 “본 계약파기약정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2015. 7. 15.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원활한 파기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당시 피고의 사기 내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합의 해지에 응하거나 그 계약금을 포기하였던 것은 아닌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의 범죄사실에도 “계속되는 피고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계약의 해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2015. 7. 16. 적법하게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계약이 위 2018. 12. 10.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취소를 전제로 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 소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0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은 그 지급일인 2015. 7. 15.부터, 2,500,000원은 그 지급일인 2015. 7.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sup>1)</sup>,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sup>2)</sup>.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해선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만을 기각하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의 쟁점 내지 피고의 주장과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